

## 「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」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

시장검증·성장성·혁신성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촉진하는 「예비유니콘 특별보증」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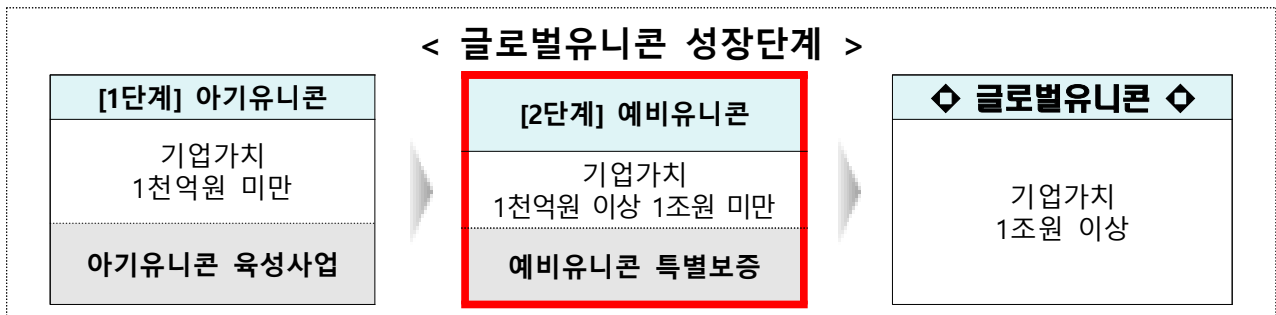
2025년 5월 7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# 1 글로벌유니콘 프로젝트 개요

#### □ 목적

- 글로벌 창업대국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니콘(기업가치 1조원 이상)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하고,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



#### □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개요

사업명	지원대상	지원규모	지원내용	접수기간
예비유니콘 특별보증	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기업 ① 시장검증, 성장성, 혁신성 충족기업 ② 기업가치 1,000억원 이상 기업 ③ 지역스타기업(누적투자 30억) 중 성장성, 혁신성 충족기업	15개사 내외	최대 200억원 이내 특별보증 및 글로벌 컨설팅 지원 등	5.7. ~ 5.30.

## 2

# 에비유니콘 특별보증

## 1

### 사업개요

#### □ 지원목적

- 시장검증·성장성·혁신성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

#### □ 지원규모 : 15개사 내외(최종 선정기업 기준)

\* 신청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
#### □ 지원대상 : 비상장기업\*으로 아래 ①, ②,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\*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

#### ① ① 시장검증, ② 성장성,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① 시장검증	○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<sup>1)</sup> 에서 50억원 이상(누적) 투자 <sup>2)</sup> 유치기업
② 성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)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% 이상*인 기업('20.12.31. 이전 설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년도말('24.12.31.) 상시종업원<sup>3)</sup> 10명 이상인 기업으로, '24년도 매출액<sup>4)</sup>이 '21년도 매출액 대비 72.8% 이상 증가</li> </ul> </li> <li>ii)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('21.1.1. 이후 설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년도말('24.12.31.)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, '24년도 매출액<sup>4)</sup>이 '23년도 매출액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</li> </ul> </li> </ul>
③ 혁신성	○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 <sup>5)</sup> 이상인 기업

#### ②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,0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 등급<sup>5)</sup> 이상인 기업

기업가치 산정기준 <sup>6)</su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식 투자 : 1주당 가격(투자액/주식수) x 총 발행 주식수</li> <li>• 전환사채 투자 :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</li> </ul> <p>※ 기준시점 : 누적 투자유치 실적 중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#### ③ 지역스타기업<sup>7)</sup>으로 ① 시장검증, ② 성장성,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① 시장검증	○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<sup>1)</sup> 에서 30억 원 이상(누적) 투자 <sup>2)</sup> 유치기업
② 성장성	○ ① 의 성장성과 요건 동일
③ 혁신성	○ ① 의 혁신성과 요건 동일

- 1)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[참고1] 참조
- 2) 투자인정 범위
  - 신청접수 기간내 투자계약, 자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(보통주·우선주·CB·BW)에 한함(현물투자, 구주투자 제외)
- 3) 상시종업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인정
- 4) 매출액은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을 우선 적용(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)
- 5) ① 시장검증, 성장성 요건, ② 기업가치 요건, ③ 시장검증, 성장성 요건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(기술평가/보증심사)를 실시하여 혁신성 충족 여부를 판단(요건①,③ BB등급 이상, 요건② B등급 이상)
- 6)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)~2)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
- 7) 지역스타기업육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선정된 기업

## □ 지원 제외대상

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법규,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(기업)
- ㉡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[참고2]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[참고3] 해당 시
- ㉢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[참고4] 해당 시
- ㉣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·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
- 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※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,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

## 2 지원내용

### □ (특별보증) 같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 특별보증 한도부여

구 분		주요내용
최초 지원	운전자금	• 운전자금 보증금액 30억 원까지 추정매출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의 1/2 금액으로 우대 적용
	R&D 자금	• 최대 20억 원 한도 (R&D에 필요한 재료비, 시제작비, 인건비 등)
	시장개척자금	• 최대 10억 원 한도 (글로벌 진출자금에 한함)
후속 지원	성과연동	• 최종평가 우수기업(상위30%)은 선정 이후 기업성과(후속투자유치, 매출액 등)에 따라 부여된 한도 이내에서 보증지원
보증비율 및 보증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85% 부분보증(협약은행* 이용시 100%), 1%** 고정보증료율</li> <li>*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부산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</li> <li>** 사회환원·공헌활동,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시 최대 0.2%p 추가 감면</li> </ul>
지원방식		• 최대 200억 이내의 한도를 부여하고 100억원까지는 선정연도(2025년)에 우선 지원하고 잔여금액은 차년도(2026년)에 지원
상환의무 부여		• 본건 보증금액 이상의 누적후속투자를 유치 시, 보증금액 10% 상환의무 부여
옵션부여		•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 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(옵션비율 : 보증금액 10%, 최대 5억원)

- \*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보증기관의 기보증금액(유동화회사보증의 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포함 보증연계투자 제외)을 포함한 금액임
- \* 신보(보증재단 포함) 거래기업은 전액상환하거나 기보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(중복보증 불가)
- \* 시설자금은 서류제출일까지 설비도입계획(도입처, 품목, 수량 등), 도입자금 규모,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되어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

**□ (해외투자매칭 지원) 선정 이후 해외투자 유치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금액에 연동하여 추가 보증한도 부여**

\* 세부 지원 기준 및 지원 한도 등에 대하여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

### 3 선정절차

**□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** (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)

구 분	주요내용	일 정
사업공고	▶ 중소벤처기업부,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	'25.5.7(수)
↓		
온라인신청·접수	▶ 온라인 신청 ( <a href="http://www.kibo.or.kr/dbranch">www.kibo.or.kr/dbranch</a> )	5.7(수) ~ 5.30(금)
↓		
① 1차 평가 (요건검토·서면평가)	▶ 2차 평가 대상기업(50개사 이내) 선정 *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	~ 6월말
↓		
② 2차 평가 (기술평가·보증심사 /유니콘선정협의회)	▶ (1단계)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*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원의 사업장 현장실사(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) ▶ (2단계) 최종평가 대상기업(20개사 이내) 선정 * 투자금액, 기업가치, 기술평가등급 등 지표 활용	~ 8월 중순
↓		
③ 최종평가 (최종선정위원회)	▶ 2차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공개 발표 및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* 최종선정위원회에는 국민심사단 참여 가능	8월말
↓		
최종선정	▶ 최종 선정기업(15개사 내외) 발표	8월말
↓		
보증지원	▶ 관할 영업점에서 보증서 발급	8월말 ~

## □ 단계별 평가 기준

### ① 1차 평가(요건검토 및 서면평가) 기준

- (1단계: 요건검토) 신청요건\* 및 제출서류 (누락여부 등) 검토

\* 투자실적, 기업가치 등

- (2단계: 서면평가)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

평가지표	배 점	평가지표	배 점
1. 글로벌 지향성	25	4. 매출규모	15
2. 투자유치금액	25	5. 고용인원	5
3. 기업가치	30		
<b>총 점</b>	<b>100</b>		

※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① 글로벌 지향성, ② 투자유치금액, ③ 기업가치, ④ 매출규모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 
\* 가점 : 아기유니콘 기업(5점), 딥테크 영위기업(3점), K-Global STAR 선정기업(2점), 지역스타기업(2점)

### ② 2차 평가(기술평가 및 보증심사/유니콘선정협의회) 기준

○ (1단계: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)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(투자용 기술평가모형 적용) 및 보증심사 진행

○ (2단계: 유니콘선정협의회)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

평가지표	배 점	평가지표	배 점
1. 글로벌 진출 가능성	15	4. 매출액 증가율	5
2. 투자유치기간	15	5. 고용증가율	5
3. 기술평가등급	30	6. 특별보증 지원 적합성	30
<b>총 점</b>	<b>100</b>		

\* 감점 : 평판리스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향후 대응방안 등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

### ③ 최종평가(국민·전문가평가) 기준

평가지표	배 점	평가지표	배 점
1. 글로벌 성공 가능성	20	4. 자금지원 효과성	5
2.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능성	50	5. 성과공유 가능성	5
3. 특별보증 지원 타당성	20	<del> </del>	
총 점	100		

## 4 연계지원사업 안내

- (M&A 지원)** 예비유니콘 특별보증한도(최대200억원) 이내에서 기술 혁신 M&A 자금\* 및 소요자금\*\* 추가 지원
  - \* 구조조정 유형(기업인수, 기업합병)에 따른 별도 가치평가를 통해 소요자금 산정
  - \*\* 기업인수에 소요되는 인수자금 및 부대비용
- 정책금융 연계**
  - (성장금융)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성장금융 등이 조성한 '혁신성장펀드'를 연계하여 대규모 후속투자 유치 지원
    - \*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'23년도 「혁신성장펀드」 조성계획(금융위, '23.2월)
  - (중진공)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(용도별 대출한도, 금리우대 등 적용)
- (해외진출 지원)**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이 중진공 GBC 사업 지원 시 우대(가점부여)적용
- (글로벌 컨설팅 지원)** 선정기업에 민간 전문 컨설팅기관(회계법인 등)을 매칭하여 경영진단, 해외진출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
- (K-Global STAR 연계)** K-Global STAR 프로그램(멘토링, 컨설팅, IR, 해외진출 및 투자 등) 대상기업으로 추천

## 5 유의사항

- (자료제출)**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각 단계별 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- (성과관리)**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등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- 이 공고 이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선정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,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평판리스크 협약서[별첨6] 미제출 또는 향후 대응방안 등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2·3차 평가에 반영되오니, 서류작성, 제출 및 발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선정 후 3개월 이내 건별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, 보증승인 및 예비유니콘 기업 선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## 6 문의처

구 분	담당기관	문의처
사업내용 관련 문의	기술보증기금	051-606-7655
	기술보증기금	051-606-7656

## 3

##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신청기간 : 2025년 5월 7일(수) ~5월 30일(금), 15시까지

신청방법 :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([www.kibo.or.kr](http://www.kibo.or.kr)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## &lt; 온라인 신청 절차(별첨1)&gt;

- ① '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' 접속([www.kibo.or.kr/dbranch](http://www.kibo.or.kr/dbranch)) → ② 'Quick MENU 예비유니콘 신청' → ③ '로그인' → ④ '양식다운로드', '신청하기' → ⑤ 기본정보 입력 → ⑥ 기술사업계획서·투자유치내역서 등 업로드(용량제한 각 항목당 15MB 유의) → ⑦ 제출('신청내역 조회'에서 신청 확인)  
\* 자세한 사항은 '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[별첨1]' 참고

\*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시 등록하며,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해 인정(마감일 접속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·장애 등 발생 가능하므로 사전 등록 요망)

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비고	필수여부	
1	기술사업계획서	(별첨2)	필수	
2	투자유치내역서	(별첨3)		
3	투자계약서 사본(투자유치내역서 상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)	-		
4	딥테크분야 영위기업 자가점검표	(별첨4)		
5	사전동의서 [신청기업용, 개인용]	(별첨5-1, 5-2)		
6	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(전년도말('24.12.31) 기준) * 기준일자: '24.12.31.'~'24.12.31.일자로 조회	-		
7	주주명부	공고일 이후 발급분		
8	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 법인등기부등본) * 말소사항 포함, 전체 페이지 제출			
9	감사보고서(2021~2024년) (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)			
10	평판리스크 관련 약속서	(별첨6)		
11	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	(별첨7)		
12	K-Global STAR 선정서	-	해당시	
13	지역스타기업 지정서	-	해당시	

\* 최종평가 대상자는 PPT 발표자료 별도 제출 (추후 안내)

\*\*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

- 참 고
1. 벤처투자기관
  2.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 제한기업
  3.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  4.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  5. 심층기술(딥테크) 기술별 예시

- 별 첨
1.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
  2. 기술사업계획서
  3. 투자유치내역서
  4. 딥테크분야 영위기업 자가점검표
  5. 사전동의서(신청기업用, 개인用)
  6. 평판리스크 관련 협약서
  7. 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

□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

1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
    - ①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**벤처투자회사**
    - 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**벤처투자조합**
    - ③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**신기술사업금융업자**
    - ④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**신기술사업투자조합**
    - ⑤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따른 **한국벤처투자**
  
  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
    - ① **신기술창업전문회사**
    - 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**개인투자조합**
    - ③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**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**
    - ④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**한국산업은행**
    - ⑤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**중소기업은행**
    - ⑥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**은행**
    - ⑦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에 따른 **사모집합투자기구**
    - ⑧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**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**
    - ⑨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**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**
  
  3.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**외국투자회사\***
    - \* 외국투자회사 : 1)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
    - 2)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
    - 3)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
  
  4. **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**
  
  5.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**투자자산운용사, 증권사**
- ※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투자자 (온라인 소액 투자자 포함) 투자실적 제외

< 보증금지기업 >

1.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
2. 제1호의 자가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3.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
  - 가.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
  - 나.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

< 보증제한기업 >

1. 휴업 중인 기업
2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3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4.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  - 가. 대표자
  - 나. 실제 경영자
  - 다. 따로 정하는 "기준"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
6. 파산·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7.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\*
  - \*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,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
8. "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\*"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
  - \* 보증브로커 개입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, 금품제공기업, 부정청탁기업 등
9. 기금,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(이하 "신보"라 한다) 또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(이하 "보증재단"이라 한다)의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)
10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11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 - 가.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 - 나.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 - 다.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 - 라.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
1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  - 가.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나.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(공동경영자 포함)
  - 다.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
14.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
### 참고3

###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
구 분	세부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	
		新	舊
도박 게임 관련	·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※ 불건전 여·부는 도박 해당여·부로 판단	3340	3340
	·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	46463, 47640	46463, 47640
	· 도박기계 임대업	69390	69390
	·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	75999	75999
	·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	91113	91113
	·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	91249
사치 향락 관련	· 주류 중개업	46102	46102
	· 귀금속 중개업	46109	46109
	· 주류 도소매업	46331, 47221	46331, 47221
	· 귀금속 도소매업	46492, 47830	46492, 47830
	· 주점업	5621	5621
	· 노래연습장 운영업	91223	91223
	· 무도장 운영업	91291	91291
	· 마사지업	96122	96122
부동산 관련	· 주거용 건물 임대업	68111	68111
	·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	68121	68121
	·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, 부동산 투자 자문업	68221, 68222	68221
기타	·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	59142	59142
	· 전화방	91229	91229
	· 복권 발행 및 판매업	91241	91241
	·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	96992	96992

### 참고4

###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
구 분	세부항목
결격 요건*	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,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 ※ 다만,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, 최대주주인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와 동일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한 것을 심사
	② 실제경영자가(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) 금융질서문란,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
	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
	④ 실제경영자(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)가 정책금융(보증부대출 포함)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

\* ①~④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지원(신청) 불가

## 참고5

## 심층기술(딥테크) 기술별 예시

기술분야		기술 예시
① AI·빅데이터		· AI 적용 기술·제품 · 빅데이터 수집·활용 등
② 시스템반도체		· 팹리스, IP, 디자인하우스, OSAT · 기타 반도체 관련 소·부·장 등
③ 로봇		· 제조용 로봇 (산업, 협동) · 전문서비스용 로봇 (의료, 물류, 국방, 사회안전 등) · 개인서비스용 로봇 (돌봄, 가사, 교육 등) ·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(AI, IoT), 휴머노이드, 드론 등
④ 미래 모빌리티		· 자율주행 환경 구현을 위한 HW, SW · 전기·수소차 관련 HW, SW · 스마트시티 구현 및 개인이동수단(UAM) 등
⑤ 클라우드·네트워크		· 클라우드, 메타버스 등 차세대 환경 구현을 위한 보안 기술 등 · 5G·6G, 무선통신 등 차세대 통신 기술
⑥ 우주항공 해양	우주·항공	· 항공기·인공위성·우주발사체 관련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
	해양	· 해양용 신에너지 공급, 저장, 관리 · 기존 해양환경 및 해양장비·설비 개선 · 해양 장비의 생산, 관리, 운용 등의 스마트화 관련 기술 · 해양 활용, 글로벌 해양 정책 대응 및 해외 의존 기술 자립화 관련 기술 등
⑦ 친환경 에너지	친환경	· 청정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· 재활용, 재사용 등 자원순환 · 수소 생산·저장·활용 등 H2 기술 · 탄소 생산·저장·활용 등 CCUS · 배터리·이차전지
	에너지	· 에너지 발전(신재생에너지 등) 및 효율화(EMS, 가전 등) 관련 기술 · 에너지 저장(ESS, 수소 등) 관련 기술
⑧ 양자 기술		· 양자컴퓨팅, 양자통신, 양자센싱 등
⑨ 바이오 헬스케어	신약·소재	· 저분자·바이오의약품, 백신 등의 신약개발 원천기술 및 AI · 신약개발 신규 모달리티 기술 · 바이오·친환경 소재 · 소부장 관련 기술 · 신약개발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등
	의료기기 헬스케어	· 만성·노인성 질환 치료용 의료기기, 진단용 키트, 디지털 치료제 등 (AI 기술 적용 등) · 디지털 헬스케어 기능이 접목된 재활용 의료기기 · 의료 빅데이터 활용 난치성 질환 진단기기 · 스마트폰 연동형 디지털 헬스케어용 앱 등
⑩ 차세대 원전		· 차세대 원자로(SMR 등), 원전 기술·부품, 안전기술 등 (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, 효율성, 경제성이 개선된 혁신적 원자로 설계 및 원전 관련 기술)

※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사업 신청·선정 가능